

제 1 장 총칙

제 1 조(명칭)

본 회사의 명칭은 "주식회사 원바이오헬스"로 한다.

제 2 조(목적)

본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1.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2. 의료데이터 플랫폼 개발업
3. 의료데이터 교환 및 운영업
4. 블록체인 연구 개발, 공급 및 유지보수업
5. 의료데이터 거래소 운영업
6. 사업 컨설팅 및 마케팅업
7. 홈페이지, 모바일 기획 및 디자인업
8. 광고, 전시 기획 및 마케팅 및 디자인업
9. 컴퓨터 도소매, 유통, 수출입 및 무역업
10. 전자금융업
11. 클라우드펀딩 개발, 공급 및 유지보수업
12. 디바이스 간 인증 보안업
13. 사업 컨설팅 및 마케팅업
14. 의료데이터 보안업
15. 핀테크 연구 개발업
16. 학술연구 및 연구개발업
17. 연구용역업
18. 학술용역업
19. 학술연구조사 및 분석업
20.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

제 3 조(소재지)

본 회사의 본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두며, 필요시 다른 지역에 지사를 둘 수 있다.

제 2 장 주식

제 4 조(자본금)

본 회사의 자본금은 금 1,000,000 원으로 한다.

제 5 조(주식의 종류 및 수)

본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로 하며, 발행 주식의 총수는 200 주로 한다.

제 6 조(주식의 이전 및 양도)

주식의 양도 및 이전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.

제 7 조(주주총회)

1.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.
2.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.
3. 주주총회의 의결은 출석 주주의 의결권으로 결정된다.

제 3 장 임원

제 8 조(임원의 구성)

1. 본 회사에는 대표이사 1인, 이사 1명을 두며, 필요에 따라 임원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.
2.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며,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 9 조(임원의 권한)

1.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며, 회사의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.
2. 이사는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결정을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.

제 10 조(감사)

감사는 회사의 회계 및 경영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며, 회사의 재무 상태를 주주총회에 보고한다.

제 4 장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련 규정

제 11 조(소프트웨어 개발)

1. 본 회사는 고품질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표로 하며, 이를 위한 최신 기술과 개발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도입한다.
2. 본 회사가 개발한 모든 소프트웨어 및 그 코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된다.
3. 회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개발자 또는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.

제 12 조(지적 재산권)

1. 회사가 개발한 모든 소프트웨어, 코드, 디자인, 알고리즘 등은 회사의 지적 재산권에 속한다.
2. 회사는 필요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제공 및 판매를 진행할 수 있다.
3. 회사는 제 3자와의 계약에 의해 발생한 지적 재산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명한다.

제 13 조(개발 계약)

1. 본 회사는 외부 개발자나 파트너사와의 계약 시,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개발을 진행한다.
2. 계약서에는 개발 범위, 일정, 비용, 지적 재산권 및 보안 규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.

제 14 조(소프트웨어 배포 및 라이선스)

1. 회사는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배포 및 라이선스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며, 고객에게 명시된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.
2.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, 배포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.

제 5 장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

제 15 조(개인정보 보호)

회사는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, 개인정보의 수집, 처리 및 저장에 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한다.

제 16 조(보안)

회사는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보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, 외부의 해킹이나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.

제 6 장 수익 분배 및 회계

제 17 조(수익 분배)

1. 회사는 이익 발생 시,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배당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.
2. 회사는 매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,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.

제 18 조(회계연도 및 감사)

1.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2. 회사는 외부 회계 감사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.

제 7 장 법적 분쟁 해결

제 19 조(분쟁 해결)

본 회사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양 당사자는 우선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며,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주지방법원을 제 1 심 법원으로 한다.

제 8 장 기타

제 20 조(정관 변경)

본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.

부 칙

본 정관은 2026년 7월 15일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개정하고,
개정일부터 시행한다.

위 정관은 원본과 상위 임원인 임원인



주식회사 원바이오텍

대표이사 김기정

